

정 관

제 정	1964.	6.	4
종간개정	생	략	
전문개정	2001.	6.	2
개 정	2001.	11.	16
개 정	2002.	6.	18
개 정	2003.	5.	30
개 정	2004.	5.	28
개 정	2005.	5.	27
개 정	2006.	5.	26
개 정	2008.	5.	30
개 정	2009.	5.	29
개 정	2010.	5.	28
개 정	2011.	5.	27
개 정	2012.	5.	25
개 정	2013.	6.	28
개 정	2014.	3.	14
개 정	2014.	8.	13
개 정	2015.	3.	27
개 정	2016.	3.	18
개 정	2017.	3.	24
개 정	2019.	3.	29
개 정	2020.	3.	27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Yuanta Securities Korea Co., Ltd.라 표기하고, 한문으로는 元大證券株式會社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
 - 가. 투자매매업
 - 나. 투자증개업
 - 다. 집합투자업
 - 라. 투자자문업
 - 마. 투자일임업
 - 바.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정부 등 관계기관의 별도의 인 ·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의하여 다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해외점포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uantakore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할지 여부 및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지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④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기타 신주의 발행조건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7 조의 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① 회사가 발행할 2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 이내로 한다.
- ③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 7 조의 2 제 2 항 및 제 7 조의 2 제 3 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은 그 주식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동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전환비율의 조정과 세부 전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⑤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0 년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의 4(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① 회사가 발행할 3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 이내로 한다.
- ③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 7 조의 2 제 2 항 및 제 7 조의 2 제 3 항을 준용한다.
- ④ 종류주식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하며,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제 462 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⑦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⑧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의 5(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 ① 회사가 발행할 4 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 상환 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은 제 7 조의 4에 따라 발행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으로 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그 외 전환에 관한 사항은 제 7 조의 3 제 4 항 내지 제 6 항을 준용한다.

⑤ 종류주식 발행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기관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2 (삭제 2003.5.30)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 제1항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미만으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리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차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삭제 2019.3.29)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로부터 15일간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3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거 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6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그리고 사업개요 등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공고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 이사로 하고, 이사회가 선임한 의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정한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제27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얹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29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

지로 한다.

제30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7조에서 정한 요건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의2(이사의 보고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여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순위의 직무대행권자가 사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다른 결의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위험관리위원회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보수위원회

②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외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신설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급여및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37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37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⑧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⑥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37조의4(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의5(감사위원회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감사위원회의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4조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계 산

제38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0조의2 < 삭제 >

제4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2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회사가 개정전의 정관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률 + 1%추가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러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 정관의 시행일 이후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 제29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8조의2 및 제29조 제2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외 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29조 제3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에서 “동양증권주식회사”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사업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53기의 사업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회사가 개정 전의 정관에 따라 발행한 우선주식(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당시 정관 및 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